

선	기관외 장
람	

시 G 보

제45호 2023. 11. 8.(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3-340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3-341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2
광양시 고시 제2023-342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3
광양시 고시 제2023-343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5

조 례

광양시 조례 제2074호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7
광양시 조례 제2075호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광양시 조례 제2076호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광양시 조례 제2077호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광양시 조례 제2078호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자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광양시 조례 제2079호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광양시 조례 제2080호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광양시 조례 제2081호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광양시 조례 제2082호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80
광양시 조례 제2083호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광양시 조례 제2084호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광양시 조례 제2085호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광양시 조례 제2086호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96
광양시 조례 제2087호	광양시 양심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광양시 조례 제2088호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규 칙

광양시 규칙 제922호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1

광양시 규칙 제923호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4

회 람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2713)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목적 : 개간사업
2. 사업의 내용 : 작물 재배지 조성
3.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증대
4. 사업의 구역 및 시행자

구분	토 지 소 재 지					면적(㎡)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일)	사 업 시 행 자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개간 사업	도로 점용			주 소	성 명
신규	광양	광양	사곡	산185-17	임야	4,733	-	90,100	2023.11.8.~ 2024.11.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사곡로 1*-*	박*희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목적 : 개간사업
2. 사업의 내용 : 토공사 등
3.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증대
4. 사업의 구역 및 시행자

구분	토 지 소 재 지					면적(㎡)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일)	사 업 시 행 자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개간 부지	도로 부지			주 소	성 명
당초	광양	옥룡	동곡	109-2	임야	469	-	610	2021. 8. 11. ~ 2023. 8. 10.	광양시 광양읍 칠 성 * 길 *	이*식
변경	광양	옥룡	동곡	109-2	임야	469	-	610	2021. 8. 11. ~ 2024. 8. 10.	광양시 광양읍 칠 성 * 길 *	이*식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8.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현월길 29 외 4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1.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 물 번 호 부 여 5 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423, 422-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현월길 29	20231108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389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죽2길 67-7	20231108	20081001	법정리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8-4, 2238-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산단1로 11	20231108	20180516	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82-9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4길 29	20231108	20120502	신금일반산업단지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629-11, 1629-12, 1629-15, 1629-18, 1630-18	전라남도 광양시 명당길 86 (태인동)	20231108	20081001	마을지명에서 인용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옥곡면 옥실로 157-4	2023. 7. 20.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 (※상세내역 불임참조)
2	이 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8.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 번	업무 구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지	광양시 옥곡면 옥실로 157-4	2023. 7. 20.	2023. 11. 8.	건축물대장 말소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10. 27.)에서 의결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74호

붙임 :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한다.

제1조(「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광양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2조(「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3조(「광양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⑭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4조(「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제2항 중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6조(「광양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8조(「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2조에 따른 협의회는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광양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13조(「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4조(「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12조의 제목“(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를“(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6조(「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7조(「광양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6조와 제8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19조(「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21조(「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충무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제1항과 제1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3조(「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4조(「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5조(「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조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7조(「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8조(「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9조(「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30조(「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8조제1항과 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광양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33조(「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

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지역돌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34조(「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5조(「광양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13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37조(「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1. 광양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신 설>	2.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신 설>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조(「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장의심의위원회) ① ~ ⑤ (생략) <u><신설></u>	제7조(장의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 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u>
<u>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 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	<u><삭제></u>

제3조(「광양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① ~ ④ (생략) <u>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 여기간으로 한다.</u> ⑥ ~ ⑬ (생략) <u><신설></u>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제></u> ⑥ ~ ⑬ (현행과 같음) <u>⑭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 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u>

제4조(「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범죄피해자 지원 자문 위원회) ① ~ ④ (생략) <u><신설></u>	제7조(범죄피해자 지원 자문 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u> <u>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회가</u> <u> 끝나면 해산한다.</u>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 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u>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u> <u>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u> <u>다.</u> <u>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u> <u>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신설></u>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⑥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u> <u>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회가</u> <u> 끝나면 해산한다.</u>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략)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u>매년 1회 정기회의</u> <u>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u> <u>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u> <u>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u> <u>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u>	② ----- <u>위원장이</u> ----- ----- ----- ----- -----.
---	--

제6조(「광양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협의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u><신 설></u>	제9조(협의회 구성) ①·② (현 행과 같음) <u><삭 제></u>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 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 가 끝나면 해산한다. <u><삭 제></u>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u>협의회</u> <u>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u> <u>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u> <u>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u> <u>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u>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u> ② (생략)	<u><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u><신설></u>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제></u> ⑥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 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회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8조(「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조에 따른 협의회는 기능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u>

제10조(「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u>

제11조(「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임기 등) ① ~ ⑧ (생략) <u><신설></u>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임기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u>

제12조(「광양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u>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u> ④·⑤ (생략) <u><신설></u>	제5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④·⑤ (현행과 같음) <u>⑥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회가 끝나면 해산한다.</u>

제13조(「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 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u> <u><삭제></u>

제14조(「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구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제6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 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u> <u><삭제></u>

현행	개정안
<u>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u> 제9조(회의)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u> ② <u>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u> ③ ~ ⑤ (생략)	<삭제>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 ⑥ (생략) <신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 ② (생략)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회가 끝나면 해산한다.</u>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u>

제17조(「광양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구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 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u>
<u>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	<u><삭제></u>
제8조(회의) ① <u>협의회 회의는</u>	<u><삭제></u>

현행	개정안
<u>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 ⑤ (생략) <u>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⑦ (생략) <u><신설></u>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삭제></u> ⑦ (현행과 같음) <u>⑧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u>

제19조(「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광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② (생략) <u><신설></u>	제8조(광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u>

제20조(「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 ⑤ (생략)	제3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삭 제></u>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⑧ <u>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u>

제21조(「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구성) ① ~ ③ (생략)	제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둔다. 간사는 광양시 총무과장과 광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u>	④ ----- -----. ----- <u>안전과장</u> ----- -----.
<u><신 설></u>	⑤ <u>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u>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승계) ① <u>시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지역사회 안전 관계 기관·단체의 장 또는 대표(이하 "기관·단체장"이라 한다)인 위원</u>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13조(회의) ① <u>협의회</u>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u>제4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u> 제20조(설치) ① <u>시장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을 심의하고 발전적 지원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 ② <u>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u> 제21조(기능) <u>위원회는 아름다운</u>	<삭제>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u>마을 만들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연구한다.</u> <u>1.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 수립</u> <u>2.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u> <u>3. 추진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u> <u>4. 지원사업의 분석 및 평가</u> <u>5. 시장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u> <u>기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u> <u>6. 그 밖에 위원회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제2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u> <u>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주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의회의원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u> <u>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 <u>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개발담당이 된다.</u> <u>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u> <u>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제2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u> <u>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u>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u>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u> <u>제2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u> <u>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u>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u> <u>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u>	<u><삭 제></u>
<u>제26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시장은 위원회와 연구회에서 수행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	<u><삭 제></u>

제23조(「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0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신설></u>	제20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⑤ <u>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 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u> <u><삭제></u>
제22조(회의)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9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혹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 ⑦ (생략) <u><신설></u>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u>

제25조(「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구성) ①·② (생략)	제1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u><삭제></u>
제1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 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 다.	<u><삭제></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조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광양시 보건의료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u>

제27조(「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무상급식지원 심의회 구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8조(학교무상급식지원 심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u>

제28조(「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설치·구성) ① ~ ⑦ (생략) <u><신 설></u>	제9조(설치·구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u>

제29조(「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3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u>

제30조(「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u> <u>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u> <u>가 끝나면 해산한다.</u>
<u>제1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u> <u>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u> <u>는 기간으로 한다.</u> <u>② 위촉직 위원</u> 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u><삭제></u>
제21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 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u>② 정기회는 기금의 운용 계획</u> <u>수립 등을 위하여 연간 1회 개</u> <u>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u> <u>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u> <u>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에</u> <u>게 서면으로 요구가 있을 때 위</u> <u>원장이 소집한다.</u> ③ (생략)	<u><삭제></u> <u><삭제></u>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 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u>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 로 한다.	<u><삭제></u>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u><삭제></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광양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구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1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 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u>
제13조(임기 등)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 등은 제7조를 준용한다.	<u><삭제></u>

제33조(「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지역돌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u>

제34조(「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u><신설></u>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회가 끝나면 해산한다.</u>
<u>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u>②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u> <u>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	<u><삭제></u>

제35조(「광양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협의회 구성) ①·② (생략) <u><신설></u>	제12조(협의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u> <u>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회가</u> <u> 끝나면 해산한다.</u> <u><삭제></u>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 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16조(회의) ① 협의회는 연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 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11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회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37조(「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구성 및 임기) ①·②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회가 끝나면 해산한다.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10. 27.)에서 의결된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75호

붙 임 :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로, 같은 조 제2호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재향군인의”를 “광양시 재향군인(이하 “재향군인”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군인회는”을 각각 “제5조”와 “재향군인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향군인회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양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법”이라 한다)----- -----. 2.-----법----- ----- -----.
제3조(시민의 협력) 광양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광양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 ----- ---- 광양시 재향군인(이하 “재향군인”이라 한다)의 ----- -----.

제4조(예우) (생 략)

1.2. (생 략)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이 「대

제4조(예우)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5조(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군인회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재향군인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② ----- 경우에 는 -----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10. 27.)에서 의결된 **광양시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76호

붙 임 :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각각 “대표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 협의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 중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 협의체”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3항의 “각각 1명”을 “각 1명”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로 뽑는다.

제3조의2제2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4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 중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각각 “읍·면·동 협의체”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

제한다.

-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항과 제7항 중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 협의체”로 한다.

- ④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 ⑤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제4조 중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제3조 및 제3조의 2, 제3조의4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업무”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를 “각 협의체의”로 한다.

제8조제1항 하단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중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과 “상근의 유급직원”을 각각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는”과 “유급 상근직원”으로 한

다.

제9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 중 “각 협의체의 회의는”과 “실무위원장은”을 각각 “회의는”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작성”을 “작성·보관”이라고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를 “각 협의체 위원장이”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협의체 기구) <u>지역보장협의체</u>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u>지역사회보장협의체</u>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2. (생략) 3. “<u>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u>”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u>미래산업국장</u>,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6. (생략) 7.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u>	제2조의2(협의체 기구) <u>대표협의체</u>----- ----- ----- <u>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u>(이하 “<u>읍·면·동 협의체</u>”라 한다) -----. 1.2. (현행과 같음) 3. “<u>읍·면·동 협의체</u>”----- ----- ----- -----. 제3조(구성) ① ----- -----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② ----- ----- ----- --, <u>시민복지국장</u>, -----, ----- -----. 1.6. (현행과 같음) <삭제>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

8.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

③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
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 서로 뽑는다.

제3조의2(실무협의체) ① (생략)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
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
거·교육업무담당 팀장 및 실무
분과 분과장은 당연직으로 한

8. 읍·면·동 협의체 -----

③ ----- 당연직
----- 각 1
명 -----.

④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 서로 뽑는다.

제3조의2(실무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

다.

제3조의4(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회) ① 읍·면·동 지역의 위
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
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
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둔다.

②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4. (생략)

③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
하여 구성한다.

1.4. (생략)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④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
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
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

제3조의4(읍·면·동 협의회) ①

----- 읍·면·동 협의회
-----.

② 읍·면·동 협의회-----

---.

1.4. (현행과 같음)

③ 읍·면·동 협의회는 읍·면·동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4.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읍·면·동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면·동장
과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서 서로 뽑은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위원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⑥ 시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을 광양시 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⑥ ----- 읍·면·동 협의체의 -----

---.

⑦ 읍·면·동 협의체-----

-----.

제4조(위원명단 공개) -----
----- 제3조 및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업무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
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 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위
원을,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에는 실무협의체위원 및 실무
분과의원, 읍면동 협의체에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
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위원
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 각 협의체의

-----.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

-----, <삭 제>

② -----
-----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는 -----
-----.

③ -----
-- 유급 상근직원-----
-----.

제9조(회의) ① 시장 또는 각 협
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4. (생략)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

-----.

④ -----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

제10조(회의록) ① -----

작성·보관-----.

1. 4. (현행과 같음)

5. ----- 각 협의체 위원

<u>포함</u>)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u>장이</u> -----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u>범위 안</u> 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생략)	제14조(회의 수당) ----- ----- ----- ----- ----- <u>범위에서</u> - ----- --.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10. 27.)에서 의결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77호

붙임 :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39세”를 “45세”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성이”를 “성별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광양시의회가”를 “광양시의회에서”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협의체 구성원”을 “협의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⑥ 시장은 청년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년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4조제5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18세~39세”를 “18세~4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 5.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8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 <u>성</u>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u>광양시의회가</u>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 4. (생략) ④ ~ ⑨ (생략)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②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u>45세</u> ----- -----. ----- ----- -----. 2. ~ 5.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성별</u>이 ----- ----- -----. 1. <u>광양시의회에서</u> ----- -----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업체 구성원은 거주 지역
별 · 성별 · 연령별 · 직업별 분
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
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제14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① ~ ④ (생략)

③ 협약체의 위원-----

-----.

④ -----

다만,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⑥ 시장은 청년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년지원 관련 기
관·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
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4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 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u>범위 내에서</u> 지원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 ③ (생략)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에서 활동하는 <u>18세~39</u> <u>세까지의</u> 개인 및 단체 2. (생략)	⑤ ----- ----- ----- <u>범위</u>-----.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u>18세~45세</u> ----- 2. (현행과 같음)
--	---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10. 27.)에서 의결된 **광양시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78호

붙임 :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투자경제과장”을 “신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신산업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 (생 략)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특별회계운용관: 광양시 <u>투자 경제과장</u>	1. ----- <u>신산 업과장</u>
2. 특별회계출납원: 광양시 <u>지역 경제과 업무담당</u>	2. ----- <u>신산 업과 업무 담당 팀장</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10. 27.)에서 의결된 **광양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79호

붙 임 :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광양시체육회 및 광양시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u>지원할</u> <u>수 있다.</u> 1. ~ 4. (생략)	제19조(운영비 등 지원) ----- ----- ----- ----- <u>지원하여야</u> <u>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10. 27.)에서 의결된 **광양시 동네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80호

붙 임 :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그라운드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동네체육시설”이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광양시장이 설치한 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u>그라운드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u> 및 그 밖의 체력단련시설 등 운동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생략)	1. ----- ----- ----- ----- ----- <u>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u> ----- ----- -. (현행과 같음)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10. 27.)에서 의결된 **광양시 보도
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81호

붙 임 :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한다.

제1조 중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명 <u>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u> <u>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제명 <u>광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u> <u>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u>적용할</u> <u>「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u> <u>규정에 의한</u> 공사원인자에 대 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 인자부담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도로 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 ----- ----- -----.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10. 27.)에서 의결된 **광양시 전세
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82호

붙 임 :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해소 지원 및 주택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5.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양시의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광양 시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가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광양시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시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임차인등 지원사업)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주택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8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등) 주택임차인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10. 27.)에서 의결된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83호

붙임 :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를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를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로 하고, 제2호의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 ----- ----- ---.
제2조(과태료 부과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 ----- ----- ----- ----- -----.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제2항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 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 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제2항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 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 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10. 27.)에서 의결된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84호

붙임 :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조금 지원 심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때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 조 및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 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 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 법」 제88조에 따른 광양시 수 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심의) ----- ----- ----- ----- ----- -----「수산업 법」 제95조----- ----- -----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10. 27.)에서 의결된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85호

붙임 :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행함에 있어서”를 “시행할 때에는”으로,

제9조제3항제4호 중 “광양시의회의장이”를 “광양시의회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여성농업인”이란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2호가목에 따 른 농업에 종사하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 소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u> 」 제3조제2호----- ----- ----- -----.
2. “여성어업인”이란 「 <u>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u> 」 제 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에 종 사하는 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2. -----「 <u>수산업·어 촌 발전 기본법</u> 」 제3조제3호- -----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 음)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 <u>시행함에 있어서</u> 여성농어 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 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정 및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② ----- ---- <u>시행할 때에는</u> ----- ----- ----- ----- ----- ----- -----.
제9조(설치·구성) ①·② (생 략)	제9조(설치·구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보육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성농어업인 위원의 수는 그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u>광양시의회의장이</u> 추천하는 의원 1명 ④ ~ ⑦ (생략)	③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광양시의회에서</u> -----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10. 27.)에서 의결된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86호

붙 임 :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력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10. 27.)에서 의결된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87호

붙 임 :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존속기한)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 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로</u> 한다. (생 략)	제39조(존속기한)----- -- <u>2026년 12월 31일까지로</u> --.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10. 27.)에서 의결된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88호

붙임 :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외의 표 중 “10:00 ~ 20:00”를 “11:00 ~ 20:00”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개시일 10:00”을 “사용개시일 11:00”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과 단서조항 중 “화요일”을 각각 “월요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휴양림 숙박시설, 야영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보험가입) 시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로 이용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2 사용시간의 야영장(평상)란 중 “10:00”을 “11:00”로 한다.

별표 3의 제6호나목 중 “3자녀”를 “2자녀”로 하고, 구분란과 주차료란에 7호부터 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주차료	사용료
7.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면제	
8. 야영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면제	
9.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면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휴양림 등 입장시간) (생 략)		제5조(휴양림 등 입장시간) (현행과 같음)		
구분	기간	입장시간		
휴양림	1. 1. ~ 12. 31.	09:00 ~ 18:00		
숙박시설	1. 1. ~ 12. 31.	14:00 ~ 22:00		
야영장	4. 1. ~ 10. 31.	10:00 ~ 20:00		
제10조의(사용시간) ①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4:00부터 마지막 사용일 11:00까지로 하고,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0:00부터 마지막 사용일 10:00까지로 한다.		제10조(사용시간) ① ----- -----, --- 사용개시일 11:00-----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제한 및 휴관) ① (생 략)		제12조(사용제한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로 한다. 다만, 별표2에 따른 성수기는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② -----, -- -- 월요일-----, ----- ----- 월요일----- -----.		
제14조(사용신청) ① 휴양림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신청) ① 휴양림 숙박시설, 야영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2(보험가입)</u> 시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로 이용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2]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차 종	사용시간	사용료	비 고	
주 차 장		• 소형,중형차량 (승용,35인승이하 승합, 5톤미만 화물차) • 대형차량 (36인 이상 버스, 5톤 이상 화물차)	1대/1일	3,000 5,000	※ 주차장의 1일 사용 시간은 시설 사용시간과 동일하고, 세미나실과 체험프로그램 이용의 경우 09:00부터 18:00로 함	
시 설 명		규 모	사용시간	사 용 료(1박)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주말	
숙박시설	숲속의집 (산막1,2지구)	• 4인실(26㎡) • 5인실(30㎡) • 6인실(37㎡) • 8인실(51㎡) • 11인실(68㎡)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40,000 50,000 60,000 80,000 110,000	50,000 60,000 70,000 100,000 140,000	1.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2.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종합숙박동	• 5인실(31㎡) • 11인실(63㎡)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50,000 110,000	60,000 140,000	
	캐빈하우스 (산막2지구)	• 5인실(33㎡) • 8인실(50㎡) • 15인실(66㎡)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50,000 80,000 150,000	60,000 100,000 180,000	
	산림문화휴양관	• 8인실(47㎡)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80,000	100,000	
	오토캠핑장	• 카라반(5인) • 카라반 사이트(121㎡)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00,000 30,000	140,000 50,000	
세미나 실		• 48석(66㎡)	09:00 ~ 13:00/1실 13:30 ~ 17:30/1실	50,000 50,000	60,000 60,000	
야영장(평상)		-	11:00 ~ 마지막 사용일 10:00	4,000	7,000	

[별표 3]

사용료 등 면제 · 감면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주차료	사용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면제	면제
2. 국민, 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면제	면제
3. 국가 또는 광양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면제	50%감면
4.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탑승한 경우	면제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면제	
6. 숙박시설 사용 (예약자 기준으로 숙박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 중복의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 부당 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음)		
가. 숙박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단 주차료 면제는 숙박시설 7인실 이하 차량 1대, 8인실 이상 차량 2대)	면제	
나.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다만,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같이 사용할 경우는 감면하지 않고, 전용면적 7인실 이하 시설로 한다.)	면제	50%감면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면제	30%감면
라.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면제	30%감면
마.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면제	30%감면
바. 타 지역 광양 향우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면제	30%감면
사. 주중(일~목)에 숙박 시설을 사용할 경우 (단, 공휴일 전일과 성수기는 제외)	면제	20%감면
7.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면제	
8. 야영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면제	
9.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면제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반드시 지참 입실할 때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 등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22호

붙임 :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상금) 조례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보상 금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보상금 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보상금)----- -----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2조----- -----.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23호

붙 임 :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단독주택용지 150제곱미터, 준주거용지는 250제곱미터, 일반상업용지는 330제곱미터”를 “준주거용지는 250제곱미터, 산업시설용지는 6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거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준주거용지는 250제곱미터 이상, 일반상업용지는 330제곱미터”를 “준주거용지는 250제곱미터, 산업시설용지는 600제곱미터”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보류지 또는 집단환지”를 “보류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주택을 포함한 대지이거나 준주거용지에 위치한 토지의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의 준주거용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에 미달되어 다른자리로 이동환지 되었을 때 최소 환지면적 30퍼센트 범위에서 공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

2. 산업시설용지 환지 최소 권리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30 퍼센트 범위에서 공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중 “토지를 면적을 줄여 환지할 수 있는 기준은 종전 토지의 면적 2천제곱미터로 하며, 이기준 면적에 초과되는 토지는”을 “토지는”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중 단서 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금액은 매각 시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유효기간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도시개발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과소 토지는 권리면적 기준으로 <u>단독주택용지 150제곱미터, 준주거용지는 250제곱미터, 일반상업용지는 330제곱미터로 한다.</u>	제6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 ----- <u>준주거용지는 250제곱미터, 산업시설용지는 600제곱미터로-----</u> ----- -----.
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u>주거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준주거용지는 250제곱미터 이상, 일반상업용지는 330제곱미터 이상</u> 으로 정한다.	② ----- ----- <u>준주거용지는 250제곱미터, 산업시설용지는 600제곱미터 -----</u> ----- -----.
제7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 ① (생략)	제7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환지 전 토지가 <u>보류지 또는 집단환지로</u>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1. ----- <u>보류지로 -----</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자리 환지시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의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기준에 미달되는 토지. <u>다만, 단독주택용지는 제외한다.</u>	3. ----- ----- ----- <u><삭 제></u>

현행	개정안
제10조(환지 배정 기준) ① (생략)	제10조(환지 배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u>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주택을 포함한 대지가 과소 토지에 해당될 때 단독주택용지 환지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u>	1. <u>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주택을 포함한 대지이거나 준주거용지에 위치한 토지의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의 준주거용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에 미달되어 다른 자리로 이동환지 되었을 때 최소 환지면적 30퍼센트 범위에서 공람 기간 중 토지 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u>
2. <u>준주거용지와 일반상업용지에 위치한 토지의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의 환지면적의 최소규모에 미달되어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야 할 경우 최소 환지면적 30퍼센트 범위에서 공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u>	2. <u>산업시설용지 환지 최소 권리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환지면적 30퍼센트 범위에서 공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u>
3. <u>단독주택용지 환지 최소 권리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가 단독주택용지 면적에 250제곱미터 이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u>	3. <삭제>

현행	개정안
④ 「도시개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넓은 토지를 면적을 줄여 환지할 수 있는 기준은 종전 토지의 면적 2천제곱미터로 하며, 이 기준 면적에 초과되는 토지는 권리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감환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감환지 된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제18조(지수의 결정) ① 정리 전·후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 당 지수는 편의상 1천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수를 결정한다. ② 종전의 토지 및 정리 후 획지의 평가는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 당 지수를 산정하고 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③ 평가지수는 해당 토지면적에 제곱미터 당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권리지수는 해당 토지의 평가지수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 --- 토지는 ----- ----- ----- ----- ----- ----- ---. <삭 제>

현행	개정안
제23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 사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생략)	제23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금액은 매각 시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유효기간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로 한다. (현행과 같음)